

統·班長報償品에關한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제안일자 : 1994년 1월 20일
제안자 : 총무재무위원장

1. 제안이유

'93년도 연말 통·반장보상품 구입 및 배포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바,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·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,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조사기간은 13일간으로 한다(94. 1. 24~94. 2. 5)
- 조사대상은 마포구청으로 한다.
- 조사반은 총무재무위원회로 한다.
- 조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실로 한다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統·班長報償品에關한行政事務調査計劃(案)

調査의 目的

'93년도 연말 통·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바,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~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·반장 보상품구입 및 배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,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調 査 期 間

1994. 1. 24.(월) - 1994. 2. 5.(토) [13일간]

調査實施對象機關

○ 마포구청(총무국, 재무국)

調査委員會 編成 및 調査場所

구분	조사위원	대상기관	조사장소	사무직원
총무재무 위원회	위원장 심재창 간사 윤동현 위원 김성환, 김유현, 박주서, 유남렬, 윤정용, 이강필, 조희태	마포구청 총무국, 재무국	총무재무 위원회실	김 건 재 전문위원 박 진 양

調査할 事案의 範圍

통·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에 관한 사항
('93년도, '92년도, '91년도)

調査日程

구분	일 정	내 용	비고
준 비 단 계	'94. 1. 20.	* 조사관계 자료 수합 * 조사계획서 수립, 채택 (위원회) *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채택, 이송 *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서 채택, 이송	
	1. 21.	*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	
	1. 24.	* 조사자료 검토, 문제점 파악	
실 시 단 계	'94. 1. 24.	* 조사의견 상정 *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* 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 * 조사 실시	
조 치 사 리 결 단 과 계	'94. 2. 5.	* 조사 종결	
	'94. 2. 5.	* 조사결과보고서 작성	
	'94. 2. 5.	* 조사결과보고서, 채택 (위원회) * 조사결과 보고(본회의) *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	

調査要領

조사는 총무국과 재무국에서 구입 배포한 통·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에 관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,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行政事項

- 가. 위원장은 조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, 간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.
- 나. 위원장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